

2024 베트남 소득세법강의

AM 양자민 회계사
회계법인

INDEX

1. 베트남의 거주자 기준.....	3
2. 근로소득	4
3.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10
4.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	17
5. 납세등록, 소득세신고, 원천징수 및 환급.....	20



1. 베트남의 거주자 기준

- 기간기준

- 과세 연도 1 년 동안 183 일 이상을 베트남에 체재한 경우

- 주거기준

- 베트남 내에 항구적 주거(영구/임시 거주증에 기재된 등록된 주거지 또는 한 과세연도 동안 183 일 이상의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를 가지고 있으며, 타 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Q) 만약 양회계사가 만약 7월1일(183일째)에 한국에서 밤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서 7월2일(184일째)에 베트남에 도착했다면 양회계사는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A) 거소기준은 입국하는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즉 양회계사는 7월1일까지 거주자이고 베트남거주일은 7월 2일의 다음날 7월 3일부터이다.



2.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 출장경비지급
- 통신료 지급 및 사무용품비
- 근무복(유니폼) 지급, 현금으로 지급시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 시간외근무수당 중 할증수당 지급액
- 1 회성 거주이전비 지원
- 출퇴근 비용 지원
-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거주자와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매년 1 회 본국 출입국 항공료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주재원 자녀의 베트남 내에 소재한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자녀 학비/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자의 외국 소재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자녀 학비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이어서

- 직원교육훈련비
- 중식대 현물지급비 (현금 보상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비 (예컨대, 시설회원권 사용료, 단체의료보험)
- 석유 및 자원 채굴 등 특정 산업에서 교대근무식으로 근무하는
- 직원들의 항공료
- 결혼식, 장례식 부조금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근로소득 이외의 개인소득

- 사업소득 (연간 1 억 VND 를 초과하는 임대 소득 포함)
- 투자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유가증권(주식) 양도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상속소득, 상금/상품, 저작권, 로열티(1천만 VND초과시)

카지노 소득은 상금 / 상품 소득인가요?



각종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 해외 개인소득이 있는 베트남의 거주자가 해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해외법상 적법하게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Tax Deductions)

1. 필수 보장 보험인 사회, 건강 및 실업보험 종업원 부담액
2. 자발적으로 가입한 연금상품계약에 대한 납입액 (일정 한도 이내의 금액에 한함)
3. 특정 허가된 자선단체에 대한 종업원 기여금
4. 각종 공제
 - 인적공제 : 월 11 백만 VND
 - 부양가족 공제 : 월 4.4 백만 VND/인,.



베트남의 세율



베트남에서는 얼마부터가 최고소득이라고 보나요 ?

연간과세가능소득(mil.vnd)	연간 과세가능소득 (천원,54krw/1000vnd)	월간 과세가능소득 (mil.vnd)	세율
0-60	0-3240	0-5	5%
60-120	324-6480	5-10	10%
120-216	6480-11,660	10-18	15%
216-384	1,1660-20,730	18-32	20%
384-624	20,730-33,700	32-52	25%
624-960	33,700-51,840	52-80	30%
More Than 960	More than 51,840	More than 80	35%

베트남의 과세가능 소득 및 세율

과세 가능소득종류	세율
사업소득	0.5%~ 5%(사업소득 업종에 따라 다른세율 적용)
이자(은행이자제외)/배당	5%
유가증권(주식)의 양도	매각대금의 0.1%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	순이익의 20%
부동산의 양도	매각대금의 2%
저작권 소득	5%
프랜차이즈/로열티 소득	5%
상금소득	10%
상속/증여소득	10%

3. 소득세 신고 및 납부 (Tax declarations and payment)

- 베트남의 근로 소득세 신고는 분기별신고가 원칙
- 단 연매출 500억동 이상인 기업은 월별신고를 해야합니다.
-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고용자가 진행할 경우 과세연도의 말일에서 세 번째 달의 말일까지, 개인이 진행할 경우 과세연도 말일에서 네 번째 달의 말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42 참고하세요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기

- 베트남 파견이 종료된 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근로소득 최종 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 연말 정산시 기존에 과다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 신고코드(tax code)가 존재하는 개인에 한해 환급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내 회사는 외국 계약자의 근로자들이 베트남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해당 개인들이 베트남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7일 이전에 지역 과세당국에 해당 인원들에 대한 정보 (이름, 소득 정보, 여권 번호 등을 포함)를 제공하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각자 과세대상 비근로소득 유형에 따른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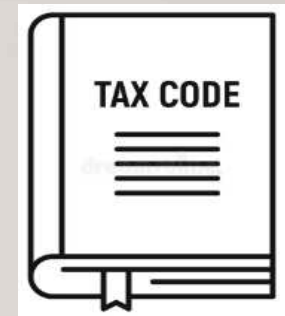
소득신고방법

개인소득세 신고코드 (Tax codes)

- 과세되는 소득을 가지는 개인들은 각각의 신고 코드(tax code)가 있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개인신고 코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소득 외의 개인소득 보유 개인들은 각자의 거주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개인 소득세 신고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한 지불 관련 원천징수

- 의무 기업은 납세자로 간주되는 가족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상여금, 현금 및 비 현금 지원, 프로모션, 거래할인, 결제할인 및 보상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서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

-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의 보험료 납부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개인에게만 적용
-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HI")의 보험료 납부는 베트남에서 체결한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된 베트남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SI")의 보험료 납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베트남 근로자 및 노동허가서를 소지하고, 무기한 또는 1년 이상의 베트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 그룹 내에서 내부적으로 파견된 (예: 본사 근무 후 베트남 파견) 특정한 외국인 근로자와 법정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SI/HI/UI 보험료 납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SI	HI	UI	Total
근로자	8%	1.5%	1%	10.5%
회사	17.5%	3%	1%	21.5%

소득세의 세율

(1)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세율

①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누진세율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PITA §22)



연간 소득금액 (백만 동)	월 소득금액 (백만 동)	세율
60 미만	5 미만	과세소득 x 5%
60 이상 120 미만	5 이상 10 미만	과세소득 x 10% - 250,000 동
120 이상 216 미만	10 이상 18 미만	과세소득 x 15% - 750,000 동
216 이상 384 미만	18 이상 32 미만	과세소득 x 20% - 1,650,000 동
384 이상 624 미만	32 이상 52 미만	과세소득 x 25% - 3,250,000 동
624 이상 960 미만	52 이상 80 미만	과세소득 x 30% - 5,850,000 동
960 이상	80 이상	과세소득 x 35% - 9,850,000 동

② 복권판매대리인 등의 원천징수세율

복권판매대리인, 보험대리인, 온라인판매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복권발행회사, 보험회사 및 온라인판매회사는 납세자가 수취하는 월별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PITC §7 ⑤)

연간 소득금액 (백만 동)	월 소득금액 (백만 동)	세율
60 미만	5 미만	과세소득 x 5%
60 이상 120 미만	5 이상 10 미만	과세소득 x 10% - 250,000 동
120 이상 216 미만	10 이상 18 미만	과세소득 x 15% - 750,000 동
216 이상 384 미만	18 이상 32 미만	과세소득 x 20% - 1,650,000 동
384 이상 624 미만	32 이상 52 미만	과세소득 x 25% - 3,250,000 동

[Case]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 (PITC §7 ③)

C는 해당 월에 근로소득 40,000,000 동을 수취하고, 근로소득의 7%를 사회보험료로, 1.5%를 건강보험료로 지급합니다. C는 18세 미만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지출한 기부금은 없다. 해당 월에 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소득금액: 40,000,000 동
- 공제금액: 23,200,000 동
 - 인적공제: 11,000,000 동
 - 부양가족공제: 4,400,000 동 × 2명 = 8,800,000 동
 - 사회보장보험 및 건강보험: 40,000,000 동 × (7% + 1.5%) = 3,400,000 동
- 과세표준: 40,000,000 동 - 23,200,000 동 = 16,800,000 동
- 산출세액: 16,800,000 동 × 15% - 750,000 동 = 1,770,000 동

③ 임의보험 보험금의 원천징수세율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보험업자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때마다 보험금의 10%를 소득세 원천징수한다. 베트남법에 따른 생명보험 등이 아닌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보험금의 10%를 소득세 원천징수한다. (PITC §7 ⑥)

4.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

4.1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세율

(1) 사업소득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생산·판매활동에 따른 수입금액에 다음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PITA §25 ①·③)

1. 재화 판매활동의 경우: 1%
2. 용역 판매활동의 경우: 5%
3. 제조, 건설, 운송 및 기타 사업활동의 경우: 2%

수입금액은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액을 말하며, 비거주자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도 베트남 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모든 금액이 수입금액이 된다. (PITA §25 ①·③)

비거주자의 사업수입금액은 거주자의 사업수입금액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비거주자가 여러 사업분야에서 수입금액을 수취하면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PITC §17)

(2) 근로소득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PITA §26 ①)
- 베트남과 국외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베트남 원천 근로소득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베트남 원천 근로소득을 계산합니다
- **비거주자가 베트남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 베트남 원천소득 = (베트남 근무일수 / 해당 연도 근무일수) × 세전 합산근로소득 + 기타 베트남 원천소득
- **비거주자가 베트남에 체류하는 경우**
- 베트남 원천소득 = (베트남 근무일수 / 365일) × 세전 합산근로소득 + 기타 베트남 원천소득

(3) 자본투자소득

- 비거주자의 자본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거주자가 베트남 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자본을 투자한 대가로 받은 자본투자소득에 5%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PITA §27) 비거주자의 자본투자소득은 거주자의 자본투자소득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PITA §19)

(4) 자본양도소득

비거주자가 베트남 법인 또는 개인의 지분을 양도하여 받은 양도가액에 0.1%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 (PITA §28)
자본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을 공제x

(5) 부동산양도소득

부동산 양도가액에 2%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 (PITA §29)
비용공제x

(6) 지적재산권소득 및 프랜차이즈소득

1천만 동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5%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

비거주자의 프랜차이즈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베트남 내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하여 건별로 1천만 동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5%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PITA §30 ②)
지적재산권소득 등은 거주자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PITC §22)

(7) 상금소득, 상속소득 및 증여소득

비거주자의 상금소득, 상속소득 및 증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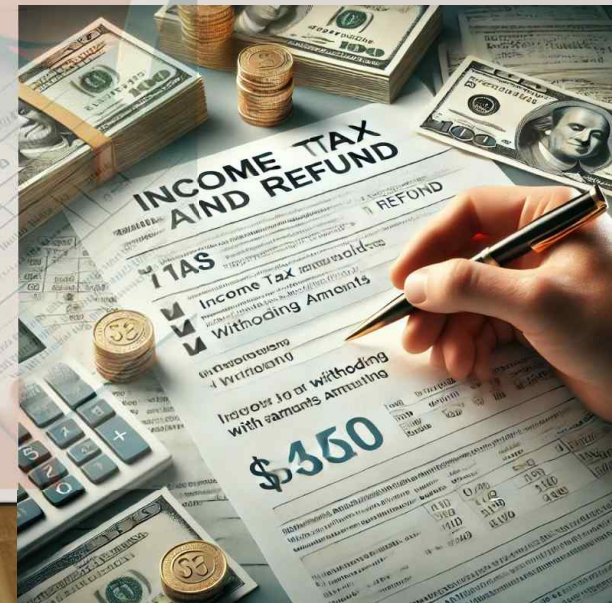
5. 납세등록, 소득세신고, 원천징수 및 환급

소득세에 대한 등록, 신고, 공제, 납세, 검산, 조세환급, 법률위반처리 등의 조세관리는 조세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PITA §8 ①)

5.1 납세자등록

다음과 같은 법인이나 개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소득세 납세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PITc §24 ①)

1.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개인
2. 과세소득을 수취하는 개인
3.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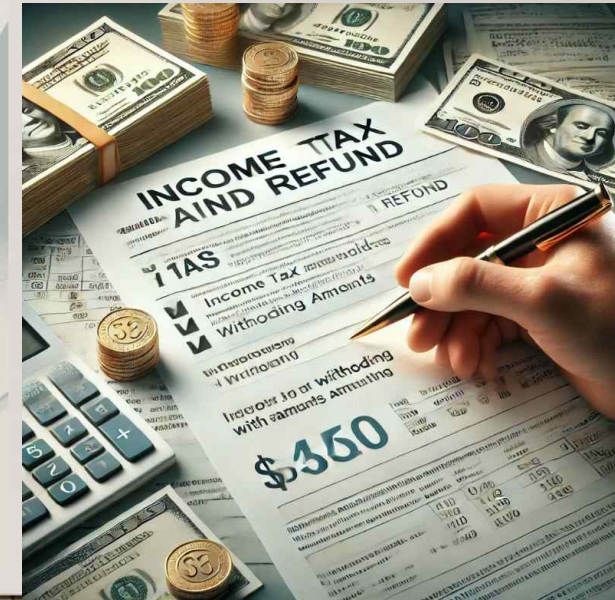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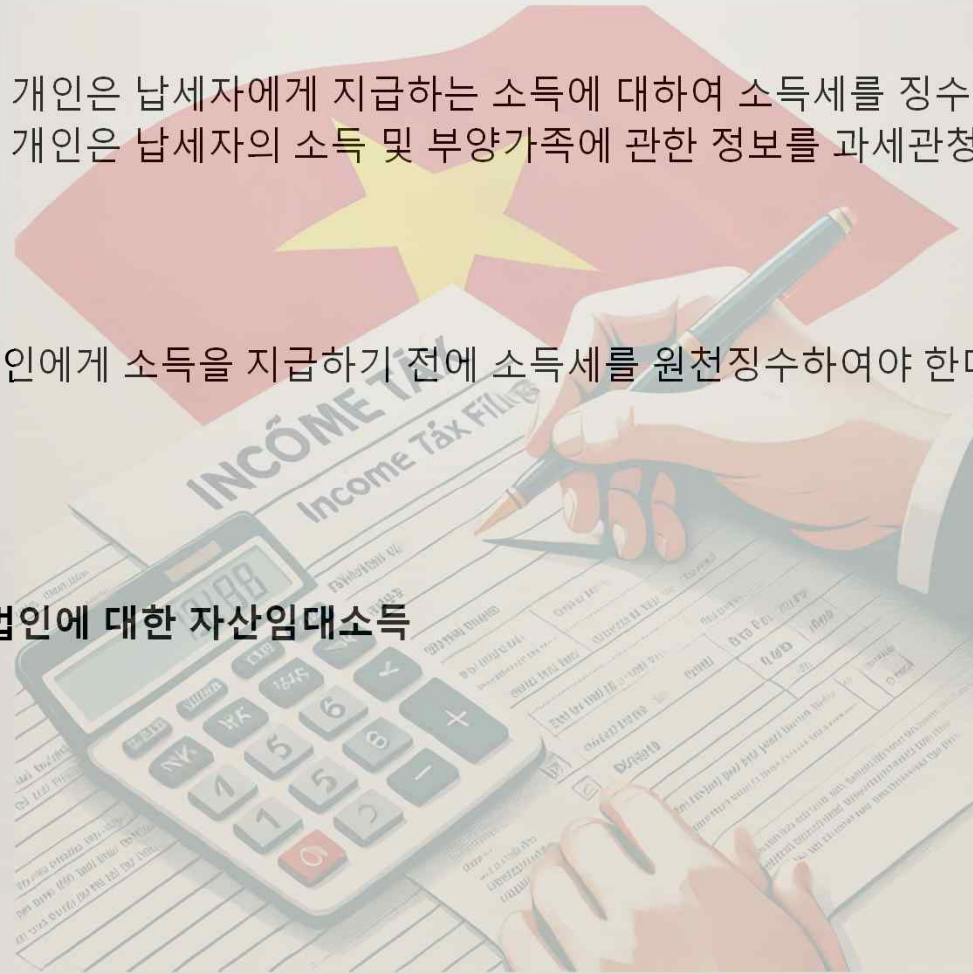
5.2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PITC §24 ① a)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납세자의 소득 및 부양가족에 관한 정보를 과세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PITC §24 ②)

(1)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수취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PITc §25 ①)

- 근로소득
- 보험대리인 등의 소득, 법인에 대한 자산임대소득
- 자본투자소득
- 증권양도소득
- 상금소득



(2) 원천징수 소득세의 신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지급인은 월별 또는 분기별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신고는 해당 과세연도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첫 달부터 하며, 해당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가 분기별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가 월별인 경우이거나 없는 경우(대표 사무소의 경우) 월별로 신고한다. (PITc §26 ① a및b)

원천징수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지급인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징수한다. (PITC §26 ① c)

(3) 원천징수의 면제

개인이 수취한 과세소득의 총액에서 인적공제를 차감하면 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개인은 소득지급인에게 원천징수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지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과세년도 말에 소득지급인은 원천징수 면제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PITC §25 ① i)

(4)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지급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수취인에게 발행한다. 소득지급인이 소득수취인을 대신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PITC §25 ② a)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동일 과세연도의 지급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1매를 발행할 수 있다. 근로계약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소득지급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지급액을 합산하여 1매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다. (PITc §25 ② b)

[Case] 원천징수영수증(PITc §25 ② b)

- (1) Q씨는 X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씩 X사의 소유지에서 관상용식물을 재배한다. X사는 매달 3백만동을 Q씨에게 지급 한다. 이 경우, Q씨는 X사에게 매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거나 또는 2013년 말에 1매(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14년에 1매(201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다.
- (2) R씨는 Y사와 장기근로계약을 체결한다.(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 이 경우 R씨가 정산을 하기 위하여 Y사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Y사는 2013년에 1 매(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14년에 1매(201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원천 징수영수증을 발행한다.

5.3 소득세의 신고

소득을 수취하는 개인은 조세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PITA §24 ① b)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신고 (PITc §25 ② b)

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하는 거주자: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베트남 소재 대사관이나 영사관,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수취하는 거주자는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한다. 국외의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는 거주자는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한다.

②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하는 거주자(공동사업자 포함):

(가) 기장을 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기별로 소득세를 신고한다.

(나) 기장이나 계산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의 경우 일정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며 매년 소득세를 신고한다.

(다) 이동판매상은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 과세당국이 판매하는 계산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수취하는 때에 소득세를 신고한다.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며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비사업자는 수입금액을 수취하는 때에 소득세를 신고한다.

(마) 주택, 토지, 수면 및 기타재산 사용권의 임대소득을 수취하는 개인(공동사업자 포함)은 분기별 또는 수입금액을 수취하는 때 소득세를 신고한다.

③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를 연말정산하거나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예외이다:

(가) 납부할 세액이 납부한 세액보다 작은 경우

(나) 사업소득만 있고 일정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가계 포함)

(다) 주택 또는 토지사용권 임대소득만 있고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가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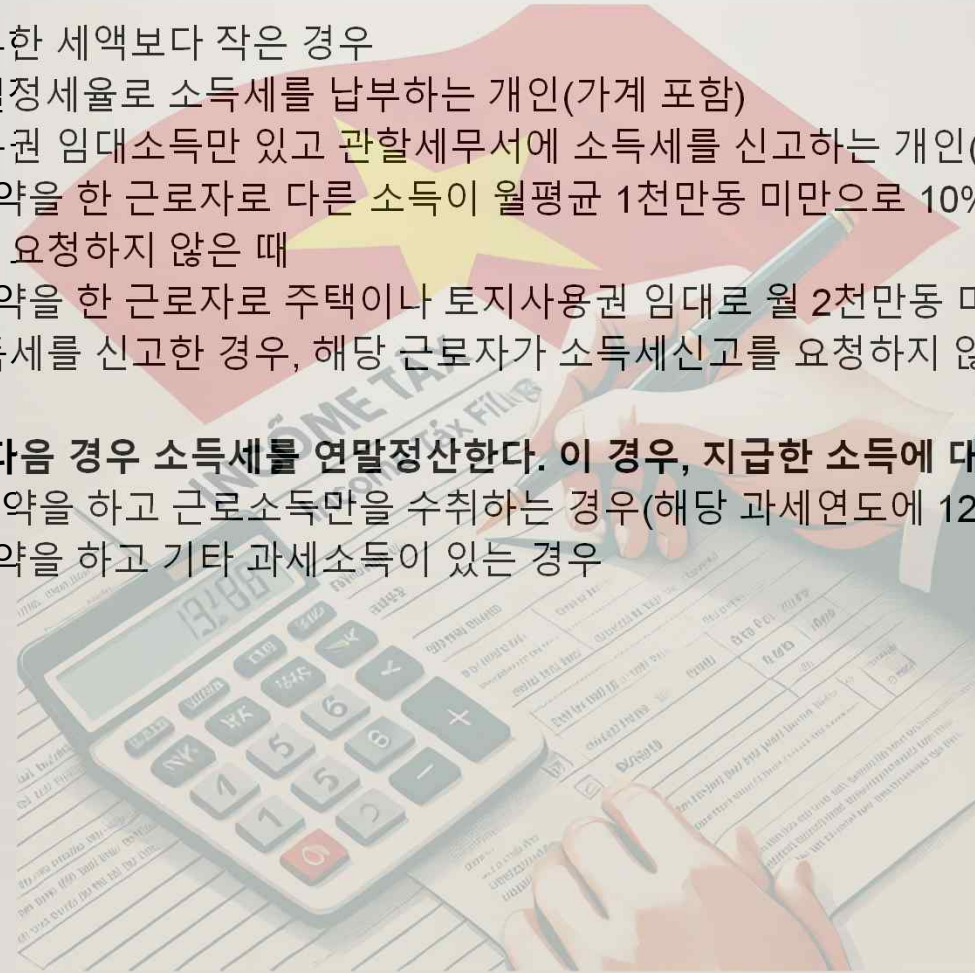
(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로 다른 소득이 월평균 1천만동 미만으로 1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득세신고를 요청하지 않은 때

(마)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로 주택이나 토지사용권 임대로 월 2천만동 미만을 수취하면서 관할세무서에 해당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득세신고를 요청하지 않은 때

④ 근로소득 지급인은 다음 경우 소득세를 연말정산한다. 이 경우,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정산한다.

(가)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소득만을 수취하는 경우(해당 과세연도에 12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포함)

(나)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Case]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득세 신고 (PITc §26 ②)

S씨는 베트남에 처음으로 입국하여 2014.6.1부터 2016.5.31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다. 2014년 S씨는 베트남에 80일 체류하면서 134백만동의 근로소득을 수취하였다. S씨는 2015.1.1부터 2015.5.31까지 110일 체류하면서 106백만동의 근로소득을 수취하였다. 2015.6.1부터 2015.12.31까지 S씨는 105일을 체류하면서 122백만동을 수취하였다. S씨는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나 기부금이 없다. 이 경우 S씨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2014년 S씨는 비거주자이지만, 2014.6.1부터 2015.5.31의 12개월 기간 중에 S씨는 190일(80일 + 110일)을 베트남에 체류하였다. 따라서 S씨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 2014.6.1부터 2015.5.31의 1차 과세연도 :

- 1차연도 근로소득 합계: 134백만동 + 106백만동 = 240백만동
- 인적공제: 11백만동 x 12 = 132백만동
- 과세소득: 240백만동 - 132백만동 = 108백만동
- 1차연도의 산출세액: 60백만동 x 5% + (108백만동 - 60백만동) x 10% = 7.8백만동

+ 2차연도(2015.1.1부터 2015.12.31)에서 S씨는 215일(110일 + 105일)을 체류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 2015년 근로소득: 106백만동 + 122백만동 = 228백만동
- 인적공제: 11백만동 x 12 = 132백만동
- 과세소득: 228백만동 - 132백만동 = 96백만동
- 2015년의 산출세액: (60백만동 x 5%) + (96백만동 - 60백만동) x 10% = 6.66백만동

+ 2015년 세액정산을 할 때 이중과세분은 5개월이다. (2015년 1월부터 5월)

- 이중과세된 세액공제: (7.8백만동/12개월) x 5개월 = 3.25백만동
- 2015년 소득세 납부세액: 6.66백만동 - 3.25백만동 = 3.35백만동

• 증권양도소득의 신고

거래소 주식양도시 개인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은행, 투자사들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합니다.

• 상속소득 및 증여소득의 신고

상속이나 증여 소득을 수취한 개인(비과세되는 경우 포함)은 그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소득세를 신고한다. (PITc §26 ⑥ a)
관련 국가기관 등은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상속이나 증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비과세되는 경우 포함)한 후에 부동산, 유가증권, 출자지분 및 기타자산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의 명의개서를 진행한다. (PITc §26 ⑥ b)

• 거주자 국외원천소득의 신고

분기별로 소득세를 신고한다.

•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수취하는 베트남원천소득

분기별로 소득세를 신고한다. (PITC §26 ⑧ a)

• 일정세율 사업자 과세특례의 개요

일정세율 사업이란 자진신고사업자, 복권판매대리인 등, 자산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를 말한다.

소득 연간 1억동 이하이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공동사업자 또는 가계사업자의 수입금액이 1억동 이하이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이 경우 모든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1사업자로 계산한다.(PITc15 §2 ① c)

[Case] 일정세율 사업자(PITc15 §2 ①)

- (1) A씨는 2015년 4월 사업을 시작하여 9개월 후 9천만동(월 1천만동)을 벌 것으로 기대 한다. 1년간 환산수입금액은 1억 2천만동이다. 이 경우, A씨는 2015년 4월부터 수입 금액 9천만동에 대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B씨는 세무당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다. 2015년 10월 B씨는 사업을 중단하였다. 이 경우, B씨는 2015년 마지막 3월에 대한 일정세액을 면제받는다.
- (3) 가계사업자 C는 구성원이 4명이다. 2015년 가계사업자 C는 사업소득 180백만동을 벌었다. 이 경우 가계사업자 C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일정세율 사업자의 납부세액의 계산

일정세율 사업자 납부세액은 과세수입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PITc15 §2 ②)

(가) 과세수입금액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수입금액은 사업의 과세기간 중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수취하는 수입금액(세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일정세율 사업자가 세무당국에서 교부한 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과세수입금액은 영수증에 따른 일정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과세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세무당국은 조세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PITc15 §2 ② a)



일정세율에 따른 세금 계산

업종	부가세율	소득세율
재화의 도매 및 소매(수수료대리인 판매 제외)	1%	0.5%
용역, 건설(건축자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용역 : 관광객 및 투숙객에게 단기숙박시설 제공; 학생, 근로자 등에게 장기숙박시설 제공; 음식료, 오락과 숙박시설 제공. 다만, 아파트 월 또는 연 임대와 같은 장기숙박시설의 제공은 제외 한다.(부동산임대로 구분) - 화물처리 및 운송부대용역(터미널 운영, 티켓판매, 주차용역 등) - 우편 및 배달 용역 - 증개, 경매, - 수수료대리용역 - 법무, 재무, 회계, 세무, 관세 용역 - 전산자료처리용역, 통신망 및 전산통신장비 임차 - 사무지원 및 기타 지원용역 - 사우나, 마사지, 노래방, 댄스장, 당구장, 인터넷, 게임방 - 세탁소, 미장원 - 컴퓨터 및 전기용품 수리, 기타 수리용역 - 건설자문, 설계 및 감리용역 - 기타 용역 - 건축 및 설비(건축자재 제외, 산업기계장비 설치 포함) 	5%	2%

(표 뒷 페이지에 이어짐)

업종	부가세율	소득세율
자산의 임대 + 주택, 토지, 상점, 창고, 장소(다만 숙박용역은 제외) + 자동차 및 기타 기계장치 임대(운전자 제외) + 기타 자산의 임대(부수용역 제외)	5%	5%
복권, 보험, 다단계판매 대리인 활동		
제조, 운송, 재화가 수반되는 용역, 건축자재를 포함하는 건설		
- 재화의 제조 및 가공 - 광물의 채취 및 가공 - 여객 및 화물 운송 - 재화를 수반하는 - 용역(훈련, 수리, 재화판매와 관련한 기술이전) - 음식료 용역 - 기계장치, 자동차 수리 - 건축자재를 포함하는 건설 및 설치(공업기계장치 설치 포함)	3%	1.5%
기타 사업활동 - 매입세액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5% 대상 제품 제조 - 매입세액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5% 대상 용역 - 위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 - 기타 부가가치세 비과세 용역	2%	1%